

서울특별시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3100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알레르기질환 예방 및 관리교육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올바른 알레르기 예방 및 관리 실천과 건강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
- 나.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서울시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- 「지역보건법」 제30조(권한의 위임)
 - 「지역보건법」 시행령 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
 - 「서울특별시 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서울시 아토피·천식교육정보센터의 운영)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민간위탁(재위탁) 필요성

- 서울특별시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주요 위탁사무는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(유치원, 어린이집 포함) 운영 지원,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·보급,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제공 등이며
-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서울시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.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(유치원, 어린이집 포함) 운영지원
-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·보급
-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축
- 알레르기질환 정책개발 지원
- 기타 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사업 등에 관하여 “시”가 지정하는 사항 등

라. 민간위탁기간 : 2026.1.1.~2028.12.31.(3년)

마.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(재위탁)

바. 소요예산 : 390백만원

- 민간위탁금 : 390백만원(국비 50%, 시비 50%)

사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

제30조(권한의 위임)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하거나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**

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4.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, 실험 또는 검사 업무

○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제7조(서울시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) ② 시장은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김혜진 (☎ 2133-7884)